이사, 감사, 고문, 우대회원 및 원로회원 추천에 관한 규정

1984. 4. 27 제정
1986. 4. 25 개정
1990. 4. 28 개정
1992. 2. 13 개정
1994. 1. 21 개정
2008. 2. 23 이사 추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2009. 11. 6 이사, 고문 및 감사 추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에 따라 이사, 감사, 고문, 우대회원 및 원로회원의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이사, 감사, 고문, 우대회원 및 원로회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이하"이사선발추천위원회")는 학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이사)

1. 이사는 현직이사와 신임이사 후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임이사 후보의 명단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작성한다.
2. 추천될 이사 선정의 기본원칙
   1)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칙을 준수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선정한다.
   2) 학회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분야를 고루 반영한다.
   3) 본 학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다변화한다.
   4) 학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중점을 두되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다.
   5) 학회활동에서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6) 경력과 연배를 중시하되 세대이전을 고려한다.
   7) 관련 타 학회에 기여도가 높은 자의 순위를 낮추어 학회직의 기회를 넓힌다.

제4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하고, 이사선발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제5조(고문)

1. 고문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20년 이상의 회원 중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고 학회의 운영에 발전적인 조언이 가능한 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발전에 도움이 가능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당연직 고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3.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당연직 고문을 포함한 고문은 이사선발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제6조(비공개원칙) 이사선발추천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과정에서 거론된 개인에 관한 심의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제7조(당연직에 대한 임기) 학회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선임된 이사 및 당연직 고문은 당해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하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개정일 현재의 고문은 임기까지 고문직을 유지한다.